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039

발의연월일: 2024. 7. 19.

발 의 자:권칠승·김 윤·박수현

강유정 · 김남근 · 송옥주

허 영ㆍ이병진ㆍ조인철

강경숙 · 김태선 · 안태준

이기헌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하여 수사하는이른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법제화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졸업생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후배 여학생들을 상대로 음란 합성물을 만들어 퍼뜨린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인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공개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수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위장수사·함정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수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도입된 신 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확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신분위장수사·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절차 등을 추가하는 등 수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상응하는 기본권 보호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10까지 신설).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14조제2 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 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 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 거래
- 3.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 ③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의3(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 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 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 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3개 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할수 있다.
 - ④ 제3항의 신청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 ·기간·장소·방법 및 해당 신분위장수사가 제22조의2제2항의 요 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법원은 제3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부한다.
 - ⑥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

- 소 · 방법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⑦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2제2항의 요건이 존속하여 그 수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 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2조의4(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22조의2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22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22조의 3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 제22조의5(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사법경찰관리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1.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 하여 사용하는 경우
- 2.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 3.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 4.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 제22조의6(신분위장수사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 검사는 제22조의2제2 항 및 제22조의4에 따른 신분위장수사·긴급 신분위장수사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 참고인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대상자에게 신분위장수사·긴급 신분위장수사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22조의2제2항 및 제22조의4에 따른 신분위장수사·긴급 신분위장수사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수사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또는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대상자에게 신분위장수사·긴급 신분위장수사를 집행한 사실과 집 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분위장수사·긴급 신분위장수사를 집행한 사실을 통지할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제3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제3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제22조의7(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가수사본부장"이라 한다)은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 수사 관련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8(비밀준수의 의무) ①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7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집행·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9(면책)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 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 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법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③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법경찰관리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22조의10(수사 지원 및 교육)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신분 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승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사법경 찰관리에게 수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고,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22조의2(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14
	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
	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
	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
	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
	집(이하"신분비공개수사"라 한
	<u>다)를 할 수 있다.</u>
	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
	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
	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u>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u>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
	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변경 또는 행사 의자 시부의 사용하 게야.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 <u>거래</u>
- 3.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 함한다)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 ③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22조의3(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① 사법경찰관리 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 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 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 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자 료를 첨부하여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신 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 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 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신청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및 해당 신분위장수사가 제22조의2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사유를 기재한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법원은 제3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한다)를 신청인에게 발부한다.
- ⑤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 ·장소·방법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①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

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 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 2제2항의 요건이 존속하여 그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 이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의4(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① 사법경 찰관리는 제22조의2제2항의 요 건을 구비하고, 제22조의3제3항 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

- 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 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 분위장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22조의3제7항 및 제8항을 준 용한다.
- 제22조의5(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 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사법경찰관리 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 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1.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 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2.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 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 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 3.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 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 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 4.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22조의6(신분위장수사의 집행 에 관한 통지) ① 검사는 제22 조의2제2항 및 제22조의4에 따 른 신분위장수사 · 긴급 신분위 장수사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 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 는 처분(기소중지결정, 참고인 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 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디지털 성범죄 수사 의 대상자에게 신분위장수사 • 긴급 신분위장수사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22조의2 제2항 및 제22조의4에 따른 신 분위장수사·긴급 신분위장수 사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 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

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 고인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수사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또는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지털성범죄 수사의 대상자에게 신분위장수사・긴급 신분위장수사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분위장수사·긴급 신분위장수사를 집행한 사실을 통지할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현저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제3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u>설></u>

<신 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제3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 터 30일 이내에 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의7(국가경찰위원회와 국 회의 통제)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 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가수 사본부장"이라 한다)은 신분비 공개수사가 종료된 즉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 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 경찰위원회에 수사 관련 자료 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8(비밀준수의 의무) ①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7까지
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집
행・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

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아니 된다.

② 제1항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9(면책) ① 사법경찰관리 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 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 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법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문지 아니한다.

③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 위장수사 행위로 타인에게 손 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법경 찰관리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

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22조의10(수사 지원 및 교육)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
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
위장수사를 승인하거나 보고반
은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수
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
을 하고,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
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
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야 한다.